

비축대상물자 고시

[시행 2026. 1. 2.] [재정경제부고시 제2026-21호, 2026. 1. 2., 일부개정.]

재정경제부(물가정책과), 044-215-2772

비축물자의 범위			
1	알루미늄류	8	방산물자용 원자재 ²⁾
2	구리류	9	재활용원자재 ³⁾
3	아연류	10	긴급수급조절물자 ⁴⁾
4	연류	11	경제안보품목 ⁵⁾
5	주석류		
6	니켈류		
7	희소금속류 ¹⁾		
<div>1) 희소금속류는 실리콘, 망간, 코발트, 바나듐, 인듐, 리튬, 탄탈럼, 스트론튬, 비스무스 등이 포함됨.</div> <div>2) 방산물자용 원자재는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중 동법 13조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무기체계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서 구체적인 비축품목은 조달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 협의하여 정함.</div> <div>3) 재활용원자재는 금속 스크랩 등 원자재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자를 말함.</div> <div>4) 긴급수급조절물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를 말함.</div> <div>5) 경제안보품목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0조에 의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동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품목을 말함.</div> <div>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/div>			